

업무안내

전기안전관리자 선·해임신고

해당 글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

○ 법적근거: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

-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전기설비 종류

-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-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-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(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)의 터널용 전기설비
- 동일산업단지내 동일사업자의 2이상사업장으로 용량합계가 2,500kW미만인 전기설비
-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
-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

4.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선임

○ 법적근거: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

-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전기설비 종류

동일 산업단지내 3개소 이하의 사업장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 1,500kW 미만의 전기설비